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00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3
3. 관계기관 의견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금전채무 이행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u>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u>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법정이율) ① ----- ----- ----- ----- ----- ----- -----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2. 검토의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법정이율은 현행법상 민사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연 5%)¹⁾,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연 6%)²⁾,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등으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으며, 이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년부터 연 12%로 규정되었음.³⁾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일	1981. 3. 2. (제정)	2003. 5. 29.	2015. 9. 25.	2019. 5. 21.
법정이율	연 2할 5푼 (연 25%)	연 2할 (연 20%)	연 100분의 15 (연 15%)	연 100분의 12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의 취지는 채권자에

1)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2)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라도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보다 낮은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이행이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으며, 사실심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⁴⁾

다만, 승소한 채권자에게 실손해 이상의 이득을 주게 되면 채무자에게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지나치게 높은 법정이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패소한 채무자가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부여하여 남소를 조장하거나 채무자에게 지나친 손해를 강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이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행법은 이행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4)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바49 결정.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개정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 주기가 짧으면 시장 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과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의 충실한 반영의 필요성보다는, 소송 지연과 상소권 남용을 막고 사실심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는 점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개정안은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시장금리·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정안은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연 100분의 40과 같은

5)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278 전원재판부 결정.

상한 없이 경제 사정의 변동과 같은 불분명한 지표로 법정이율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58차례 변경되었고,⁶⁾ 해당 기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대부분 5% 미만이었는데,

이는 현행 민사법정이율 5% 및 상사법정이율 6%보다도 낮은 이율에 해당하여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촉진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의 고려 요소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이정문의원은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민사법정이율 및 상사법정이율을 각각 개정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97호)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99호)을 함께 발의하였고, 해당 법률안들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변동 주기를

6)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사전적으로 미리 확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가 구체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점에 개입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

<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단위: %)

연도	일자	기준금리	연도	일자	기준금리
2025	05월 29일	2.5	2011	01월 13일	2.75
2025	02월 25일	2.75	2010	11월 16일	2.5
2024	11월 28일	3	2010	07월 09일	2.25
2024	10월 11일	3.25	2009	02월 12일	2
2023	01월 13일	3.5	2009	01월 09일	2.5
2022	11월 24일	3.25	2008	12월 11일	3
2022	10월 12일	3	2008	11월 07일	4
2022	08월 25일	2.5	2008	10월 27일	4.25
2022	07월 13일	2.25	2008	10월 09일	5
2022	05월 26일	1.75	2008	08월 07일	5.25
2022	04월 14일	1.5	2007	08월 09일	5
2022	01월 14일	1.25	2007	07월 12일	4.75
2021	11월 25일	1	2006	08월 10일	4.5
2021	08월 26일	0.75	2006	06월 08일	4.25
2020	05월 28일	0.5	2006	02월 09일	4
2020	03월 17일	0.75	2005	12월 08일	3.75
2019	10월 16일	1.25	2005	10월 11일	3.5
2019	07월 18일	1.5	2004	11월 11일	3.25
2018	11월 30일	1.75	2004	08월 12일	3.5
2017	11월 30일	1.5	2003	07월 10일	3.75
2016	06월 09일	1.25	2003	05월 13일	4
2015	06월 11일	1.5	2002	05월 07일	4.25
2015	03월 12일	1.75	2001	09월 19일	4
2014	10월 15일	2	2001	08월 09일	4.5
2014	08월 14일	2.25	2001	07월 05일	4.75
2013	05월 09일	2.5	2001	02월 08일	5
2012	10월 11일	2.75	2000	10월 05일	5.25
2012	07월 12일	3	2000	02월 10일	5
2011	06월 10일	3.25	1999	05월 06일	4.75
2011	03월 10일	3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